

제 정	1978.08.01.
개 정	2024.03.26.

이사회 규정

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

이사회 규정 [2024.03.26.]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적용】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【권한】

-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-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-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성

제 4 조 【구성】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【의장】

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순위에 따른다.

제 6 조 【이사 아닌 자의 출석】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 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의

제 7 조 【종류】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.
2. 정기이사회는 (홀수)월 (넷째)주 (수)요일에 개최한다.
다만, 개최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며, 정기이사회일에 회의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.
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.

제 8 조 【소집권자】

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5 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 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.

제 9 조 【소집절차】

1.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7 일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10 조 【결의방법】

1.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며, 결의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유·무선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.
2.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3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【질서유지】

이사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4 장 부의사항

제 12 조 【부의사항】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재무제표의 승인
- 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4) 정관의 변경
- 5) 자본의 감소
- 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9) 이사, 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
- 10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12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- 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14) 이사의 보수
- 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2) 공동대표의 결정
- 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4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5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6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7) 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유효성평가 보고
- 8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9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10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11)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신주의 발행
- 2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3)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
- 4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에 관한 사항
- 5) 자기주식의 소각

- 6) 전환사채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7) 중요한 투자의 결정
 - 8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- 9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 - 10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 - 11)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사항
 - 12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한 사항
 - 13) 기타 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- 1)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 - 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- 3) 타회사의 임원 겸임
5. 기타
- 1) 중요한 소송의 제기과 화해에 관한 사항
 - 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
 - 3) 10 억원 이상의 기부금에 관한 사항
 - 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 장 위임

제 13 조 【위임】

이사회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 【위원회】

1.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) 집행위원회
 - 2) 감사위원회
 - 3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- 4)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2.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3.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전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.

제 6 장 기타사항

제 15 조 【의사록】

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의 안전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6 조 【간사】

1. 이사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2.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회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7 조 【규정의 개폐】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부 칙 (1978.8.1.)

제 1 조 이 규정은 1978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 (1997.8.1.)

제 1 조 이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1998.5.7.)

제 1 조 이 규정은 1998년 5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4.20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00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12.11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2.19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9.22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4.21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3.25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12.21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11.17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3.26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